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578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희

피고, 피항소인 1. B

2.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9. 9. 19.

판결 선고 2019. 10. 24.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단13101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5.10. 11. 접수 제987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2005.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10. 11. 접수 제9875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9. 11. 25. 접수제115899호 및 2012. 6. 22. 접수 제58820호)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09. 4. 23. 및 같은 해 6. 1. 각 가압류 및 압류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원고는 2010. 12. 2. 위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480811호)에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고의 남편 C은 신용보증기금 E지점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C의 지인인 F이 2억 원이 필요했는데, 담보가 충분치 않아 C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B에 대한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위해 C은 처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채무자를 F이 아닌 원고로 잘못 기재했습니

다).

마. F은 2004. 4. 21.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2009. 4.20.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설령 그것이 아니어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F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는 보이 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2009. 4. 20.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4. 21.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규설, 판사 김혜선, 판사 김보라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위 경량철골지붕 19층 공동주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48.9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대 57556.3㎡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건의 비율 57556.3분의 63.164 ㎡